

건설업 인사노무 관리 실무 ②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 시·도회를 순회하며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련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회 노무강습회 교재로 사용된 '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를 이번호부터 연재한다. [편집자주]

- 본지 연재 계획 -

1. 2013년 달라지는 노동법 해설 ①②
2.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실무
3. 4대 보험 정산 대응
4. 일용근로자 인사·노무관리 실무
5. 노동부 지원금 제도



2013년 달라지는 노동법 해설 ②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구분	종전	신설 및 개정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 안됨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가입 확대 (보험료 본인 부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규모 및 인턴지원 기간 변경	중소기업 청년인턴 4만명 채용 100인 미만 기업 6개월, 100인 이상 4개월	· 5만명으로 확대 · 50인 미만 6개월, 50~99인 4개월, 100인 이상 3개월

구분	종전	신설 및 개정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족연금 18세 미만까지 지급 • 근로자 사망시 아내는 연령과 상관 없이 연금지급, 남편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연령을 상향(18세 미만 → 19세 미만) • 남편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제한 폐지(60세 이상 → 폐지)
건강보험료 인상	5.80%	5.89%
고용보험료 인상 (실업급여)	근로자 0.55% / 사업주 0.55%	근로자 0.65% / 사업주 0.65% (2013. 7월 시행예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출산후 1년 이내 1년 이상 계약	출산후 15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시	신설	만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인턴기간(4개월) 중 참여자 인건비(임금의 50%, 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월 65만원, 6개월) 지급

8. 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

구분	종전	신설 및 개정	관련법규 (시행일)
사업장 위험성 평가 본격시행	2010~2012년 일부 지역에 시범사업 추진	<p>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위험성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사례집, 모델, 가상체험프로그램 등 관련정보·자료 제공 -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소규모 사업장 대상)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 유예, 산재보험료 할인(관련 법 국회 심의 중) 등 인센티브 부여 	법 관련고시 (2013.1.1)
안전인증, 자율 안전확인 신고 대상 기계·기 구 확대 조정	신설	기계적 결합으로 인해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제조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 절곡기,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등 3종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확대하고, 산업용 로봇, 분쇄기 등 13종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2013.3)

구분	종전	신설 및 개정	관련법규 (시행일)
건설업 시스템 비계 재정지원	신설	10억원 미만 건축공사의 시스템비계 임차비용 지원. 건설업체당 1,000만원 한도 지원(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교체·설치하는 경우 임차료 차액 및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고시 (2013.1.1)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신설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시 (2013.1.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 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미만인 경 우 하도급계약의 적정 성 심사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달시 에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토록 함	법 제34조 제1항제2호 (2012.12.2)
경미한 건설 공사 기준 상향 조정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 무내용에 해당하는 건 설공사로서 공사에정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법 제8조제2항 (2012.11.1)
건설업 등록기 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수 -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한해 한번만 중복인정 중복인정 가능한 기술능력의 수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추가등록 1인에 한해 중복 인정 - 5인 이상인 경우 최대2인까지 중복인정(단, 철도, 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제외)	고시 제2013- 60호 시행령 16 조제1항제2호 (2013.2.11)

